

「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
등 에 관 한 법 률」 시 행 령
일 부 개 정 안

방송통신위원회

법제처 심사 전

대통령령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의2 및 제6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)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서 “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(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
2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화상·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·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. 이 경우 방

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가능성,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, 서비스의 목적·유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지정하여야 한다.

가.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

나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

다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로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자는 매년 6월말까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.

1. 임원

2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
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2시간 이내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

1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
 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 3.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제69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) 법 제64조의5제1항에서 “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.

별표 9 제2호처목부터 그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느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 저목을 처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위반행위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저. 법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2항제4호의 4	600	1,200	2,000
--	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9 제2호 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드.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76조제3항제25호	300	600	1,000
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--

별표 9 제2호 비고 중 “도목부터 초목까지의 규정(보목과 오목”을 “로목부터 코목까지의 규정(소목과 조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35조의2(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)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서 “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 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(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2.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부호·문자·음성·음향·화상·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·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	

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5월말까지 지정하는 자.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가능성,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, 서비스의 목적·유형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와 그 서비스를 지정하여야 한다.

가.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(법인인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를 말한다)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

나.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

다.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로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②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자는 매년 6월말까지 불법촬영

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.

1. 임원

2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

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관한 2시간 이내의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.

1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

2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

3.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

<u><신 설></u>	4.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대신 교육 을 받게 할 수 있다. 제69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 무자의 범위) 법 제64조의5제1 항에서 “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자”란 제35조의2제1항에 따 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자를 말 한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윤리팀	
연 락 처	(02) 2110 - 1549